http://dx.doi.org/10.17703/JCCT.2022.8.6.515

JCCT 2022-11-63

# 예방적 관점에서 살펴 본 아동학대 대응체계 분석 -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

# Analysis of Child protection system from a preventive Perspective : Focusing on the German case

홍문기\*

## Hong, Moonki\*

요 약 본 연구는 독일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예방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함의점을 찾아보고 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법적차원, 정책적 차원, 전문성 차원에서 분석틀을 제시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 아동청소년지원법은 국가의 개입 이전에 가정의 역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방적 지원체계를 규정하였다. 둘째,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이 조기개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셋째, 연방아동보호법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을 규정하였다. 넷째,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책임기구인 청소년청은 예방적 지원과 개입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인력의 전문성을 위해 아동청소년지원법에 자격기준을 명시하고, 3년 이상 전담공무원에게 아동보호전문인력 자격을 부여한다.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 신고체계로 작동하는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예방적 지원체계로 확대해야 한다. 둘째, 학대받은 아동을 위한 보호조치뿐만 아니라 잠재적 위험아동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간 조기경보체계를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모니터링을확대해야한다. 셋째, 아동과 부모가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역기능을 지방자치단체가 유연하고 포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넷째, 네트워크 협력체계를 위해 아동보호협력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주요어 : 아동학대 대응체계, 예방적 관점, 아동복지, 아동보호협력법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child protection system in Germany from a preventive perspective and attempts to find the applicable implications to Korea. The research method was analyzed in terms of legal, policy and professionalism. The result is as follows. First, Child and Youth Support Act in Germany stipulated a preventive support system to restore the function of the family. Second, according to the Civil Act, it was stipulated that the family court could intervene early. Third, the federal Child Protection Act stipulated community cooperation for thd child protection system. Fourth, the Youth Agency as the general authority made it possible to provide preventive support and intervention at the same time. Firth, qualification standards were specified in the Child and Youth Support Act. Child protection specialists are granted to public officials who have worked for more than three years. The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child protection system, which operates as a child abuse reporting system, should be expanded to a preventive support system. Second, it is necessary to expand monitoring by establishing an early warning system between networks in order to establish a support system for potentially at-risk children. Third, local governments should support children and parents flexibly and comprehensively for dysfunction caused by difficulties at home. Fourth, it is necessary to enact the Child Protection System Cooperation Act for a network cooperation system.

Key words: Child Protection System, Preventive Perspective, Child welfare, Child Protection Cooperation Act

\*정회원, 완주군청 주무관 (단독저자) 접수일: 2022년 10월 31일, 수정완료일: 2022년 11월 6일 게재확정일: 2022년 11월 9일 Received: October 31, 2022 / Revised: November 6, 2022 Accepted: November 9, 2022 \*Corresponding Author: moonki0124@gmail.com County of Wanju, Korea

# I. 서 론

우리 정부는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관계부 처합동으로 발표하고, 민간단체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전환하였 다. 공적 대응체계의 정책방향은 공공에서 현장조사를 추진하고, 사례관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대응하는 방 식이다. 2020년 7월에는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 과 2021년 1월「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수립 하고, 기관 간 정보연계 및 인프라 확대, 단계별 제도개 선 등의 세부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정부와 지방자 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1년 아동학대 신고건 수는 53,932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37,605건으로 '19년 13.7%, '20년 2.1%로 예년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 이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 아져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등 아동학대에 대한 조기발견과 대응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 고, 코로나 상황에서 아동학대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 였다. 하지만 눈에 띄는 통계수치는 재학대 건수이다. 재학대 건수는 '21년 5.517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1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년에 비해 2.8%가 증가 하였다. 문제는 재학대 건수가 '18년 2.543건(10.3%). '19년 3,431건(11.4%), '20년 3,671건(11.9%)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1] 이는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공적체계가 작동하였어도 피해아동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는 반증이며, 한번 학대되었으나 재학대 받는 아동 은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 따라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의 전면적인 검토와 평가를 통해 시스템의 개편이 필요 한 시점이다.

우리나라 대응체계는 아동학대 신고를 기점으로 작동하는 사후개입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즉 신고가 된 이후부터 즉각적인 현장조사와 분리조치, 친권에 대한 개입, 가해자에 대한 처벌 등이 신속하게 이뤄진다. 하지만 아동학대로 판정된 아동에 대해서만 지원체계가 가능하고, 위험이 있으나 뚜렷한 상흔이 없는 잠재적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체계가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아동학대로 판정된 아동에 대해서도 매년 재학대가 증가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아동에 대한 서비스가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우리나라 아동보호서비스는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하면 모든 기능이 작동하도록 정책이 설계되었다. 이러한 설계는 국가의 공권력의 명확한 시점과 정책의 효과성에서 분명한 성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아동의 지속적인 양적·질적 서비스와 가정의 기능강화 측면에서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정책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위해서학대가 발생하였을 때 즉각적인 개입뿐만 아니라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가족의 기능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학대가 발생하기 이전에 가정에 역기능이나 양육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양한 지원체계가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독일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대한 예방적 접근체계를 검토하고, 정책을 제안하고자한다.

## 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예방적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비교연구 국가로 독일을 선택했다. 아동보호시스템을 분석한 길버트(Gilbert)는 독일의 아동보호체계는 예방적 관점에서 가족중심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국가가 중심이 되어 아동보호를 하는 것이 특징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사후에 집중적으로 개입하는 시스템을 가진 나라에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한다. [2]

쉬미트(Schmid)는 국가 간 비교연구에서 비교국가의수가 적고, 유동적인 사회문화적 요인이 클수록 거시적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3] 독일의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예방적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하여 거시적 관점인 법적기반과 정책적 대응체계, 인력의전문성을 연구의 분석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주요 분석내용은 첫째, 아동학대 대응체계와 관련하여 독일의 주요 법적현황을 살펴보고, 대응체계에 따른 특성과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둘째, 제도적인 분석차원에서 청소년청을 중심으로 독일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분석하고,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의 유용성을 분석한다. 셋째, 인력의 전문성도 중요한 요소라 볼 수있다. 즉 아동학대 대응체계 성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력의 전문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의 분석들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의 분석틀

Table 1. Research Framework

분석틀	주요 분석 내용
① 법적 차원	독일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따른 주요 법적현황 및 특성 도출
② 정책적 차원	청소년청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 분석 및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 유용성 분석
③ 전문성 차원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성공적 요인으로서 인력의 전문성 분석

# Ⅲ. 연구결과

#### 1. 법적기반 분석

독일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관련법은 크게 헌법(GG: Grundgesetz), 아동청소년지원법(KJHG : Kinderund Jugendhilfegeseetz), 민법(BGB: Buergerliches Gesetz buch), 연방아동보호법(BKiSchG: Bundeskinderschutz gesetz), 형법(StGB: Strafgesetzbuch)으로 볼 수 있다. 헌법은 제6조 2항에서 아동의 안전과 보호, 발달상에 권한과 책임을 일차적으로 부모에게 규정하였다. 이러 한 의미는 아동이 성장하여 자립할 때까지 부모에게 그 책임을 규정하고, 국가의 개입에 대하여 부모는 거부권 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부모가 적절한 아 동양육과 보호문제를 가정에서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국가가 부모 양육권에 개입할 수 있다. 이 때 국가의 권한은 부모 양육권의 보장보다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이 우선된다고 볼 수 있으며, 필요시 친권의 개입 을 통한 아동의 안전과 보호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헌 법에서는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총책임기구를 아동청소 년지원법 상에서의 청소년청으로 규정하였고, 친권의 제한과 박탈 등은 가정법원에 권한을 둠으로써 국가의 개입과 부모의 방어권을 가정법원이 이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4]

아동청소년지원법은 아동·청소년, 가족에 대한 예방 적 지원서비스와 아동의 위험발생시 개입이 가능한 규 정으로 볼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지원서비스는 보 충성의 원칙에 따라 민간단체에서 업무의 우선권이 있 도록 규정한 반면, 아동의 위험발생 시 개입에 대한 우 선권은 국가의 업무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지원과 개입 간의 경계가 모호하여 독일사회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 었다. 합의점은 비례성의 원칙을 근거한다. 국가는 부모 양육권에 개입하기 이전에 가정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먼저 제공해야 하며, 부모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가는 친권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한다고 본다. 단 국가가 양육권에 개입하였을 경우에는 개입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개입과 동시에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보호가 담보되어야 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국가의 개입이 언제부터 가능한지에 대한 논쟁은 2005년 아동청소년지원법 개정으로 귀결된다. 아동학대 대응체계와 관련하여 국가개입의 절차와 일시보호 권한, 관련기관 협력을 명확히 규정한다. 먼저 아동복지의 위험발생 시관계기관과 청소년청은 위험요인을 인지함으로써 절차가 시작된다. 청소년청은 위험요인을 구체적으로 측정해야 하며, 필요시 가정법원에 사전개입을 요청할 수있다. 청소년청은 아동이 위험상황에 놓여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시보호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의 개입하에 친권제한이나 명령이 가능한다. [5] (KJHG 8a조)

20세기 초, 독일사회에서 아동학대신고시스템 도입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과거 나치즘의 전체주의 정권의 통제와 중앙정부의 단일적 기능의 문제점, 사회적 밀고 문제로 신고시스템 만의 정책 설계는 지양되었다. 반면에 아동·청소년문제에 있어서 예방적 지원체계가 확대되어야 비처벌적인 관점에서 공동체와 가족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논의는 국가가 개입이전에 도움이 필요한 부모나대상자가 스스로 찾아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다양한 지원체계를 갖춰 유연하게 지원하도록 하였다. [6]

따라서 아동청소년지원법이 예방적 지원체계를 고려한 설계였음은 1990년 개정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73년부터 실시된 아동청소년지원법(구. 청소년지원법) 개정논의는 국가의 과도한 개입과 규제의 방향을 가정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한다. 특히 국가는 부모와 아동을 오랜 시간 통제할 수 없으며,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위해 가정의 역기능을 먼저 회복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기존 청소년청의 친권 개입권한은 가정법원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가정 개입에 있어 일시적이고 한시적으로 권한을 사용할 수 있도록조정하였다. 개정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7]

- · 사후개입적 관점에서 예방적 관점으로 전환
- · 아동, 부모 상황에 따라 서비스를 세분화하여 지원, 보호체계는 일차적으로 부모의 양육기능을 강화
- ㆍ 지역체계 내에서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

- · 장애 아동·청소년을 사회통합
- · 시설보호를 축소하고, 니즈에 따른 프로그램 지원

아동청소년지원법에 따른 예방적 지원체계는 크 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가족지원서비스 (familienunterstuetzende Leistungen)는 스트레스나 가 정위기 등을 경험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아동 및 부모상 담, 교육지원, 양육상담 및 지원, 주거지원, 위험상황 시 양육 및 지원, 긴급보호 지원 등이다. (KJHG 제16조~21조) 둘째, 가족보충서비스(familienergaenzende Leistungen) 는 부모의 보호나 양육수준이 부적절하거나 한계가 발 생할 경우 외부서비스를 통해 부모역할을 지원하는 서 비스이다. 아동 이용시설 및 교육지원, 아동돌봄서비스 등과 연결된다. (KJHG 제22~26조) 셋째, 가족대체서비 스(familienersetzende Leistungen)는 부모의 역할과 관 련하여 가족기능이 완전히 상실한 아동과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서비스로 외부시설이나 위탁부모에게 단기간 혹은 장기간 아동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KIHG 제33~35조) [4]

독일 아동보호체계에서 예방적 지원이 작동하는 이 유는 민법에 따른 가정법원에 조기개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민법 제1666조에 따라 공공지원서비스에도 불 구하고 부모가 아동을 돌볼 수 없을 때 또는 아동을 보 호할 수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개입이 허용된다. 가 정법원은 청소년청의 청구에 따라 직권으로 심사를 시 작한다. 심사절차는 아동의 문제파악 및 상담, 양육권자 및 청소년청(관계기관)의 의견수렴 등을 실시한다. 다 만,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기 이전에 아동의 긴급한 상 황이 발생하거나 청소년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긴 급명령을 할 수 있다. 사전적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2008년 7월 12일에 개정된 아동복지 위험발생 시 가정 법원의 조치법(Gesetz zur Erleichterung familiengerich tlichen Massnahmen bei Gefaehrdung des Kindes Wohl)은 아동학대의 상흔과 위험상황 발생 전이라도 청소년청이 가정법원에 요청함으로써 절차가 시작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부모에게 아동양육과 관련된 의무를 수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8] 가정법원의 이 행명령은 다음과 같다.

· 부모에 대한 명령 : 공공서비스 지원, 의료지원, 학교 의무이행

- · 접근금지: 아동안전을 위한 가해자의 접근금지 및 아 동의 보호명령, 가해자와의 연락 또는 만남 금지
- · 친권 제한 및 박탈 : 양육권자 변경 또는 친권 제한· 박탈

가정법원은 비례성 원칙에 따라 친권의 제한이나 접 근금지를 명령하는 것보다 가정에 기능회복을 위한 다 양한 공공서비스 지원을 우선 명령한다. 다만, 어느 특 정조치에 제한되지는 않으며, 아동과 가정이 역기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행해야 한다.

2012년 1월에 시행된 연방아동보호법(Bundeskinder schutzgesetz)은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학대 예방체계 협력법으로 볼 수 있다. 법이 제정된 이유는 청소년청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아동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협력이 절실하며, 협력이가능할 때 효과적인 예방체계가 가능한다고 보았다. [5]

연방아동보호법 제1조에 따르면, 관련 기관은 예방 적 차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공동으로 이행할 것 을 규정하였다. 특히 지역사회의 모든 기관은 임신부에 서 3살까지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아동과 관련된 정보와 상담, 지원체계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 한 학교와 의료기관, 공공과 민간기관 등이 서로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2. 정책적 대응체계 분석

독일은 아동청소년지원법 제2조, 제8a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업무를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하였다. 특히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국가에서 해야 할 업무로 규정하였고, 아동·청소년 서비스 제공기관은 민간에서 보충성의원칙에 따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주목할 점은 아동보호의 예방적 지원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이행할 것을 규정해놓았다. 공공과 민간의 예방적 지원체계에 따른 역할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4]

- · 민간기관: 아동·부모, 가정환경에 대한 상담 및 예방 적 지원, 아동위험사정 및 필요시 청소년청 연계
- · 청소년청 : 예방을 위한 지원체계 수립, 아동·부모, 가 정환경에 대한 지원, 일시보호 진행, 가정법원 청구
- · 가정법원 : 아동 및 가해자 상담, 가해자 조치나 친권 제한 등



자료: www.kinder-jugendhilfe.info

그림 1. 독일 아동·청소년 지원체계 Figure 1. Child and Youth Support System in Germa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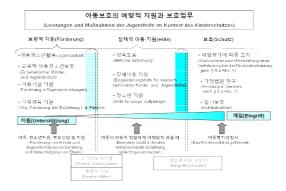
청소년청은 중앙부처인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에 속해있고, 주청소년청과 지역 청소년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청소년청은 주정부 차원의 정책을 개발하고, 민간단체와 지역 청소년청을 지원한다. 지역 청소년청은 지역단위 총책임의 기구로써 아동청소년지원법에 따른 업무를 추진한다.

독일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그림 2 는 보편적·잠재적·보호체계로 나눌 수 있다. 보편적 지원은 모든 아동과청소년, 부모와 가족 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교육기관과 이용시설, 가족양육과 관련된 보편적 서비스이다. 잠재적 아동지원은 아동발달이나 학교문제,혹은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등 삶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필요시 청소년청과 논의하여 가정도우미 파견, 방과 후 학습지도, 아동심리검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동보호는 아동이위험에 처해있거나, 가정의 문제로 아동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 청소년청은 위험사정, 일시보호, 가정법원 청구등을 실시할 수 있다. [9]

주목할 만한 점은 보편적 지원과 잠재적 지원 사이에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한 점이다. 조기경보시스템은 일반 아동에서 잠재적 위험이 있는 아동으로 전환될 경우, 관련단체들이 서로 인지하고 지원체계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조기경보시스템 하에서 서로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공공서비스(시청, 가정도우미 등): 공공기관은 아동을 출산하면 담당공무원이 출산선물(꾸러미)를 가지고 가정에 방문한다. 가정에 방문하여 부모와 양육과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고 가정환경을 살펴본다. 이때

- 아동양육과 관련된 지원정책을 안내하고, 필요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가정도우미는 아동을 출산 후에 가정에 아동돌봄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 의료기관 : 의료기관은 산부인과, 소아과 등 아동의 발달상태를 확인하고, 정기검진을 통해 건강상태를 정보를 제공한다. 이때 아동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 으면, 청소년청에게 관련내용을 통지해야하며, 청소년 청은 가정법원을 통해 검진을 명령할 수 있다.
- · 교육기관 : 학교는 학교법을 통해 아동학대예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아동학대 혹은 학교폭력 등을 인지하였을 경우 최초 학교에서 위험을 사정하고, 부모상담, 학급 교체, 방과 후 수업과 연계할 수 있다. 필요시 청소년청과 연계하여 가정에 지원서비스가 가능하다.
- 사법기관: 경찰은 청소년청의 요청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초기 개입 시 일시보호 등을 할 수 있다.
  아동과 관련된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청소년청에게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 · 이외 관련단체: 상담소, 여성단체, 센터 등에 방문한 아동과 부모에게 다양한 예방적 지원을 하고, 필요시 청소년청과 연계하여 지원서비스를 요청



자료: Schone. (2013). Praevention und Intervention im Kontext Fruehe Hilfen. Vortrag zur Fachtagung "Zwischen praevention und Intervention - Konzpete Frueher Hilfe"

그림 2. 독일 아동보호서비스 예방적 지원과 보호 Figure 2. Preventive support and protection of child protection system in Germany

#### 3. 인력의 전문성

아동보호 전문인력은 크게 공공기관의 청소년청과 국가조기지원센터, 민간단체인 아동보호센터로 구분할 수 있다. 청소년청 전담공무원(ASD) 자격기준은 아동 청소년지원법 제72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적합한 교육을 받거나 경험에 기초하여 업무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보호의 업무는 3년 이상현장경험과 추가훈련을 받은 전문인력에게만 위임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주정부별로 교육프로그램은상이하지만, 9일 동안 진행되는 교육아카데미 자격코스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0]

- · 1~2일(Block 1) : 아동학대 대응체계 법적규정, 의료 적 관점, 전문 인력의 기준과 역할 등 기초이론
- · 3~4일(Block 2) : 아동학대위험평가 및 슈퍼비전의 방법, 아동학대 사례회의 및 운영방법 등 아동학대대 응체계의 인식-평가-방법 코칭
- · 5~7일(Block 3) : 전문인력의 역할과 업무, 상담실제, 현장조사, 관계기관 간 협력 등 역할-상담-협력 코칭
- · 8~9일(Block 4) : 아동학대대응을 위한 실제업무

참여기준은 공공 또는 민간단체에서 아동보호 업무 종사자로 관련교육을 받고 3년 이상 경험이 있어야하 며, 9일간의 교육을 마치면 '아동보호전문인력' 자격을 받는다. 아동보호전문인력 자격을 갖춘 전담공무원은 아동보호 관련 업무를 진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동 료 공무원이나 타 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인력의 전문성은 청소년청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예방적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는 국가조기지 원센터(Nationales Zentrum Fruehe Hilfen)에서도 살펴 볼 수 있다. 국가조기지원센터는 2007년 개소하여 16개 주정부 산하에 65개 협력사무소를 운영하고, 임산부부 터 3살까지의 영유아를 돌보는 부모를 지원한다. 전문 인력의 양성목표는 학제 간 융합교육을 통하여 조기지 원 전문가를 양성하고, 예방적 차원의 지속가능한 협력 을 목표로 한다. 대상자는 산부인과·소아과 의사, 간호 사 등 의료인력, 상담 또는 복지업무 담당자, 교육관계 자, 관련기관 실무자 등 실제적으로 예방체계에 참여가 가능한 모든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학제간 융합교육인 10개의 모듈과정을 통해 다양한 사례와 방 법을 교육하고, 실무자가 예방중심의 전문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11] 전문인력의 역할은 아동의 발 달상태를 점검하고, 문제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가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역기능을 예방적 지 원체계를 갖춰 협력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예방사업의 전담기구 격인 아동보호센터(Kinderschutz Zentren)는 1993년 쾰른에 연방사무소(Bundesgeschaeft sstelle)를 설치하는 등 현재 27개 기관이 설치되어 있다. 아동보호센터 전담인력은 가정의 갈등상황에서 위기개입을 통한 갈등 해소, 아동복지와 관련된 트라우마상담과 치료, 보수교육, 일시보호시설 등을 운영한다. 예방적 프로그램으로 임신부나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매주 자조집단을 운영하고, 아동발달 및 양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위기아동에 대한 긴급보호와 치료도 진행한다. 전담인력의 자격기준을 살펴보면, 대학에서 관력학과를 전공하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아동·청소년업무나 학대자의 폭력문제를 다뤄본경험이 있어야 한다. 특히 아동보호전담인력의 교육과정을 참여하고, 상담 또는 치료관련 자격증 등을 갖춰야한다. [12]

#### IV. 논 의

본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독일사례를 분석하여 예방적 접근방식의 정 책제안을 시도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 아동학대 대응체계 관련법은 헌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아동청소년지원법과 민법, 연방아동보호법으로 그 역할을 구분하고, 책임기관을 청소년청을 규정하였다. 아동청소년지원법은 국가의 개입 이전에 도움이 필요한 부모나 당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방적지원체계로 범위가 확대되었다.

둘째, 독일은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이 아동보호 문제에 있어 조기에 개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정을 마련하였다. 청소년청은 아동의 복지가 위협된다고 판단되거나 부모가 아동보호에 협조하기 어려울 경우에 가정법원에 친권의 제한 또는 부모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가정법원은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잠재적 위험상황 만으로도 개입이 가능하다.

셋째, 연방아동보호법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간 의무적인 협력을 규정하였다. 특히 관련기관에서 아동학대나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경우 위험사정 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청소년청과 협력하여 지원체계가가능하도록 하였다.

넷째, 정책적 측면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총 책임 기구인 청소년청은 예방적 지원과 개입이 동시에 가능 하다. 아동보호의 대상을 보편적 지원, 잠재적 아동, 보호대상으로 구분하고, 보편적 지원에서 잠재적 아동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예방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다섯째, 인력의 전문성을 위해 아동청소년지원법에 자격기준을 명시하고, 청소년청에서 근무한 3년 이상 전담공무원에게 보수교육을 통해 아동보호전문인력의 자격을 부여한다. 전문인력은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담당자로써 아동보호 절차진행 및 유관기관 협력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논의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아동학대 신고체계로 작동하는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예방적 지원체계로 확대해야 한다. 예방적 지원 체계의 대상은 다문화가정이나 장애아동. 수급권자 혹 은 한부모아동 등 아동학대의 상흔이나 징후는 없지만. 가정의 역기능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잠재적 아동이 다. 아동보호 전담부서는 가정상황에 맞게 서비스가 적 절히 이행되는지 가정의 상황을 공유받고,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야한다. 현재 지원시스템에서 양 육환경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을 경우, 아동 학대 대응체계는 추가로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일 수 있 는 지원체계를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 보호시스템 상에서 재학대가 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에 대한 시스템 점검과 개편과정이 필요하다. 보육기 관과 초·중·고 학교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 등을 정규 과목에 편성하여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해 야 한다. 특히 예방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실 시하고, 다양한 예방프로그램이 개발·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둘째, 네트워크 간 조기경보체계를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조기경보 체계는 네트워크 간 잠재적 아동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제도이다.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협력을 추진해야하며, 네트워크 간 명확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이 때에 가장 중요한 점은 아동학대의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가정의 역기능이나 양육부담 상황이 있을 경우네트워크가 어떻게 협력하여 가정을 지원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예방적접근에서의 네트워크 협력은 다음과 같다.

- · 보건소 : 출산선물을 제공할 때 가정을 방문하여 가정 화경을 점검한다.
- · 아이돌봄서비스 : 가정에 방문하여 아동을 돌봐줄 때 아동이나 부모의 양육상황을 점검한다.
- · 의료기관 : 연령별로 건강검진이나 백신여부를 확인 하고 백신을 맞지 않거나 몸에 상흔이 발생하였을 경 우 관련부서에 신속히 정보를 공유한다.
- · 어린이집, 초·중·고 : 교사는 매일 아동을 살펴볼 수 있으며, 필요시 부모와 가정환경과 양육상황 등을 논 의할 수 있다. 이때에 가정의 양육부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무엇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접근과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관과 협의한다.
- · 관련기관 : 이혼문제, 부부갈등, 심리문제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센터에 방문하는 아동이나 부모를 모 니터링하고, 아동의 양육과 발달이 적절히 진행되는 지 점검해야 한다. 필요시에 지방자치단체 전담부서 와 정보를 공유하고, 지원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 · 지방자치단체(전담부서): 전담부서는 가정의 역기능과 양육부담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유연한 지원체계를 만들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잠재적 상황이 아동학대로 진행되지 않도록 적절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셋째, 아동과 부모가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역기능을 지방자치단체가 유연하고 포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아동학대 판정으로만 지원근거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가정의 양육부담이나 역기능이 발생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예방적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전담공무원의 역량강화, 대응시스템의 기능개선 등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3세 이하아동을 돌보는 부모에게 높은 스트레스와 양육부담이증가하고 있어 위험요인이 높은 가정을 중심으로 조기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13]

넷째, 네트워크의 협력체계를 위해 아동보호협력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관련기관 간 예방적 접근을 위해서 학대의 상흔이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신고하는 것이 아닌, 역기능 징후나 양육부담 상황을 인지한 경우에도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잠재적아동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가정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통한 가정지원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아동보호협력법에는 네트워크 간 아동보호를 위한 의무적 협력과 정보공유를 적시해야 하며, 예방적 차원에서 가정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 도록 지원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 V. 결 론

본 연구는 독일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예방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한국사회에 필요한 함의점을 도출하고 자 하였다. 독일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주요특징은 가정의 기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방적 지원체계 강화, 잠재적 위험으로도 개입이 가능한 가정법원의 예방적 관여,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의무적 협력, 인력의 전문성으로 볼 수 있다.

아동학대 문제는 현대사회에서 나타난 문제가 아니라 인류가 시작하기 시점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공통된 인류사적 문제이다. 국제사회가 발달하면서 아동에 대한 관심과 인권이 증진되었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미래사회를 위한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보호는 필수 요인이 되었다. 아동학대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사회적 어려움이 발생한 아동과 가족에게 다양한 예방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 References

- [1] Ministry of Healty and Welfare, "Child Abuse & Neglect Korea", 2021.
- [2] Gilbert, N., "Combatting Child Abuse", Oxford. 1997.
- [3] Schmid, J., "Wohlfahrtsstaaten im Vergleich", 3. Auflage. Wiesbaden. 2010.
- [4] Hong, Moon-Ki, "Child protection system of Germany and its applicability in Korea. Focusing on legal and structural perspectives",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and Law. Vol. 6. pp. 97–123, 2015.
- [5] Hong, Moon-Ki. "Formation process and Discussion for Child Protection System in Germany's development process. Focusing on the historical and legal perspective",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and Law. Vol. 7. pp. 114–138, 2016.
- [6] Herrmann, B. et al, "Kindermisshandlung", 2 Auflage. Heidelberg. 2010.

- [7] Fieseler, G., Herborth, R., "Recht der Familile und Jugendhilfe", 7 Auflage. Koeln. 2010.
- [8] Nothhafft, S., "Sorgeund Umgangsrecht bei Gewalt in der Familie", Deutschen Jugendinstitue. Muenchen. 2008.
- [9] Micosatt, G., Yilmaz, E., "Kommunale Praevention und soziale Kosten. Entwurf eines fiskalischen Beobachtungssystems." Band 11. Nordrhein-Westfalen, 2018.
- [10]Bildunsakademie. bildungsakademie.de 29.10.2022.
- [11] Nationales Zentrum Fruehe Hilfen. https://www.fruehehilfen.de/29.10.2022.
- [12]Die Kinderschutz-Zentren https://www.kinderschutz-zentren.org/ 29.10.2022
- [13]Ryu, Seonsuk, Bae, Seongchan, "A study on the Effects of integrated Art Therapy to improve the Self-Esteem of the Children who Experienced Domestic Violence",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JCCT)*, Vol. 5, No. 2, pp. 163–175, 2019.